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1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양순임, 이관우,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성북”을 “성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곤란 ☐ 화재예방 강화지구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성북</u>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u>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u>성북구</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u>성북구</u>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 ----- ----- -----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라.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 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u>노인복지법</u>」에 따른 <u>홀로 사는 노인</u> 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 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생 략) 2. (생 략)	라.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 ----- --- 마. 「<u>노인복지법</u>」에 따른 6 <u>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 부부 거주 세대</u> 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 <u>2조</u>----- 사. 「<u>치매관리법</u>」 제2조에 <u>따른 치매환자</u> 아. 「<u>건축법</u>」에 따른 지하 <u>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 하는 주택</u> 자. <u>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 역에 위치한 주택</u> 차. <u>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 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u> 카. (현행 사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